

<2021년 장기요양급여수가 변경 안내문>

1. 재가급여 월 한도액(복지용구 제외)

(단위 : 원)

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월 한도액	1,295,400	1,189,800	1,021,300	573,900

2. 이용시간에 따른 등급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표(2020년 대비 1.29% 인상)

(단위 : 원)

이용시간 (1일 기준)	공단수가 100%일 경우			
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	50,600 (▲640)	49,220 (▲630)	47,820 (▲610)	47,820 (▲610)
10시간 이상 ~ 12시간 미만	55,780 (▲702)	54,370 (▲690)	52,990 (▲670)	
12시간 이상	59,810 (▲760)	58,430 (▲740)	57,040 (▲730)	

3. 이용일수에 따른 등급별 본인부담금 내역

(단위 : 원)

이용일수 기준		본인부담금 15%일 경우			
	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1일	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	7,590	7,383	7,173	7,173
	10시간 이상 ~ 12시간 미만	8,367	8,156	7,949	
	12시간 이상	8,972	8,765	8,556	
22일	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	166,980	162,426	157,806	157,806
	10시간 이상 ~ 12시간 미만	184,074	179,432	174,878	
	12시간 이상	197,384	192,830	188,232	

※ 상기 본인부담금에 해당 비급여항목(중식 3,000원, 간식 1,000원, 석식 3,000원)을 추가하시면 이용일수에 따른 금액이 산출됩니다.

4. 주·야간보호 이용자 월 한도액 기준 변경

구 분	기존(2020.12.31.까지)	개정(2021.01.01.부터 적용)
가산 기준	1일 8시간, 월 20일 이상 이용	1일 8시간, 월 15일 이상 이용
증액률	월 한도액 50%	월 한도액 20%